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2019. 6. 1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박 기 재

□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하여

조례에 명시해 운영 중이나,

□ 현재까지도 다수의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고,

서울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권한을 확대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변경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의 전속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통상적으로 2~3배수 후보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므로 전속권 침해의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고, 오히려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3명으로 늘려 서울시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삭제한 것은 일부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사들이 직접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발탁된 임원들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순혈주의’, ‘셀프추천’ 등의 논란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조례에 명기·삭제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자체 권한이므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고, 상기 법령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